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 4. 27 선고 2016가단4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
말소등기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4. 27.

주 문

1.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D 전 1,967m²에 관하여,
가.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등기소 2002. 7. 9. 접수 제19916호로 마친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나. 피고 C은 위 가항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임창현

별지